

서대문구

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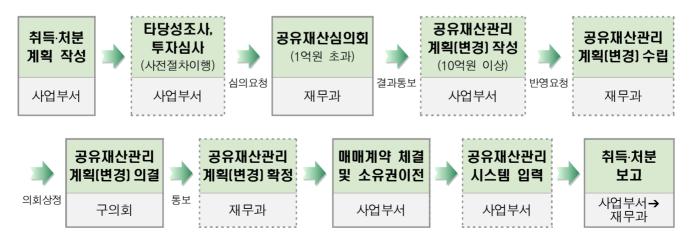
제목 공유재산 취득 관련 구의회 건의사항 및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안내

- 1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0조 및 제16조와 관련입니다.
- 2. 2014. 11. 20.(목)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의회 심의시 재정 건설위원회 건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등 공유재산 의 취득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〈 재정건설위원회 건의사항 〉

- 의회 설명자료 작성시 해당 재산의 취득 목적 및 경위를 상세히 보고 (꼭 필요한 사유, 장소선정의 적정성, 매입추진과정 등)
- 임대료, 공사비 등 비용분석 철저(현 건물과 매입건물 비교 등)
- 신규 매입시 건물 노후도, 안전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서 대책 마련
-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 및 현장 방문 안내
- 3. 또한, **공유재산의 취득**(건물신축, 매입, 기부채납 등) **또는 처분**(멸실, 매각 등)시 <u>계획</u> 수립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(정책기획담당관, 재무과, 건축과 등)과 사전 협의하여 투자심사, 공유 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〈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시 업무처리절차 〉



※ 1억원 초과 재산을 취득(계약 등)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사의결서 첨부

- 붙 임 1.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(요약) 1부.
 - 2.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요청 서식 1부.
 - 3.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설명서 및 관리계획서 각1부. 끝.

서대문구청장

수신자 서서과01-30,서서보1-5,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,서대문구의회의장(의회사무국장)

주무관	이혜영	재산관리팀장	민태일	재무과장	손남식	경제재정국장	11/21 김종두	
협조자								
시행 재무고	ŀ−21243	()	접수		()
우 120-70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(연희동) / http://www.sdm.go.kr 전화 02-330-1181 /전송 02-330-1429 / ameca@sdm.go.kr / 대시민공개								